

○教育支援機關의 施設擴充을 위하여 敎員 研修院 이진 土地買入費 260억원, 科學 敎育院 노후 시설 보수비 및 敎育研究 院 新築設計 용역비로 7억원, 學生體育 館 冷房 施設 및 기타 부속시설 확충 을 위해 15억원 등 총 282억원을 反映하였습니다.

○體育活動의 活性化를 통한 學生들의 健全한 身體發達을 圖謀하기 위하여 體育 中·高等學校 運營,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各種大會 經費와 순회코치 운영경비 및 學校 水泳場 管理費 등으로 24억원을 計上하고,

○學生들의 바쁜生活習慣의 定着 및 浩然 之氣의 培養을 위하여 대성의 집 별관 土地買入費, 최춘 야영장 강당 등 修 鍊施設 擴充費 등을 11억원을 反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敎育改革을 위한 學父母 敎 育資料 開發普及費로 1억원, 敎職員 厚 生福祉와 士氣昂揚의 일편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89억원, 名譽退職手當 88억원, 敎員停年退任과 名譽退任者 褒賞 및 스 승의 날 紀念表彰 등 行事支援費로 2 억원을 책정하는 등 180억원을 計上하 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敎育廳의 主要部分別 事業에 총 6,519억원을 投資하여 21세 기를 대비한 學生敎育을 위하여 힘껏 努力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서울特別市 敎育費

特別會計豫算(案)의 主要內容에 대해 概 略的인 說明을 마치고, 個個事業의 구 체적인 사항은 심의시 誠心껏 答辯드리 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誌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報 告)

1. 예산(안)의 제안경위

이 예산(안)은 1993.11.12서울특별시교육감으 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16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1994년도 예산(안)의 개요

제11회 정기회에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 의 예산규모는 1,889,395,571천원으로서 1993 년도 당초 예산대비 12.9%가 최종예산대비 6.4%에 해당하는 113,103,501천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3. 예산(안)의 내용

가. 세입예산

'94세입 예산액은 1,889,395,571천원으로서 '93 세입예산액 대비 6.4%인 113,103,501천원이 증가되었고, '93세입정수결정 추경액 대비 3. 89%가 증가되었으며, '92세입정수결정액 대비 19.46%가 증가되었음.

(1) 세입예산연도별 규모 대비표

(단위:천원)

연도별	금액	증감액비 D:A	증감액비 D:B	증감액비 D:C
'92정수결정액 (A)	1,581,496,283			
'93예산액 (B)	1,776,292,070			
'93정수결정추경액 (C)	1,808,516,076			
'94예산액 (D)	1,889,395,571	19.46	6.36	3.89

(2) 세입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94예산(안)		'93예산				비교증-감				
	금액 (A)	구성비 (%)	당초		최종		A-B		A-C		
			금액 (B)	구성비 (%)	금액 (C)	구성비 (%)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합계	1,889,395	100	1,672,874	100	1,776,292	100	216,521	12.9	113,103	6.4	
국 유 고 개 보	계	1,197,915	63.4	1,099,225	65.7	1,188,413	66.9	98,690	9.0	9,502	0.8
	교부금	560,261	29.7	505,079	30.2	585,192	32.9	55,182	10.9	-24,931	-4.3
	양여금	635,455	33.6	593,525	35.5	599,543	33.8	41,930	7.1	35,912	6.0
	교육환경 개선비	0	0	0	0	0	0	0	0	0	0
	보조금	2,199	0.1	621	0.0	3,678	0.2	1,578	254.1	-1,479	-40.2
전 방 입 소 도 금 기	계	402,133	21.3	271,538	16.2	271,538	15.3	130,595	48.1	130,595	48.1
	공립교원 급	148,144	7.9	141,735	8.5	132,480	7.5	6,409	4.5	15,664	11.8
	담배 세	247,615	13.1	120,753	7.2	130,714	7.4	126,862	105.1	116,901	89.4
	도서판 윤영비	6,117	0.3	8,523	0.5	7,817	0.4	-2,406	-28.2	-1,700	-21.7
	기타	257	-	527	-	527	-	-270	-105.1	-270	-105.1
자 수 재 수 이 입 기	계	289,347	15.3	302,111	18.1	316,341	17.8	-12,764	-4.2	-26,994	-8.5
	입학금및 수업료	233,445	12.3	206,545	12.4	205,012	11.5	26,900	13.0	28,433	13.9
	재산수입	14,864	0.8	37,220	2.2	39,039	2.2	-22,356	-60.1	-24,175	-61.9
	이월금	31,300	1.7	48,320	2.9	63,105	3.6	-17,020	-35.2	-31,805	-50.4
	입증지수입 기타	9,738	0.5	10,026	0.6	9,185	0.5	-288	-2.9	553	6.0

나. 세출예산

'94 세출예산액은 1,889,395,571원으로서 '93세출예산액대비 6.36%에 해당하는 113,103,501원원이 증액되었음. 이 예산 규모는 '93지출원인 추정액 대비 8.64%가 증액되는 것이고, '92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20.16%가 증액되는 예산규모임.

(1) 세출예산 연도별 규모 대비

(단위: 원원)

연도별	금액	증감액비		
		D : A	D : B	D : C
'92지출원인행위액 (A)	1,572,373,781			
'93예산액 (B)	1,776,292,070			
'93지출원인행위추정액 (C)	1,739,11,035			
'94예산액 (D)	1,889,395,571	20.16	6.36	8.64

## (2) 세출예산 소관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94예산(안)		'93예산				비교증-감					
	금액 (A)	구성비 (%)	당초		최종		A-B		A-C			
			금액 (B)	구성비 (%)	금액 (C)	구성비 (%)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합계	1,889,395	100	1,672,874	100	1,776,292	100	216,521	12.9	113,103	6.4		
본	계	1,516,996	80.2	1,297,865	77.6	1,332,987	75.0	219,131	16.9	184,009	13.8	
	인건비	1,204,592	63.8	1,077,735	64.5	1,077,735	60.7	126,857	11.8	126,857	11.8	
	학교	19,068	1.0	18,148	1.0	20,341	1.1	920	5.1	-1,273	-6.2	
	운영비											
	사학	154,986	8.2	118,484	7.1	128,564	7.0	36,412	30.7	26,442	20.5	
	지원비											
	시설비	87,223	4.6	27,937	1.7	48,372	2.7	59,286	212.2	38,851	80.3	
	교육환경	0	0.0	0	0.0	1,150	0.1	0	-	-1,150	-100	
	개선사업비											
	교육	31,583	1.7	25,602	1.5	26,786	1.5	5,981	23.4	4,797	17.9	
청	사업비	12,873	0.7	12,560	0.8	13,064	0.7	313	2.5	-191	-1.5	
	행정비											
	기채	300	0.0	100	0	100	0.0	200	200.0	200	200.0	
	상환금											
	예비비	6,461	0.3	17,299	1.0	16,975	0.9	-10,838	-62.7	-10,414	-61.7	
	계	372,399	19.8	375,009	22.4	443,305	25.0	-2,610	-0.7	-70,906	-16.0	
	교	인건비	(990,891)	(52.4)	(890,521)	(53.2)	(888,604)	(50.0)	(100,370)	(11.3)	(102,287)	(11.5)
		학교	100,498	5.3	81,001	4.8	92,469	5.2	19,497	24.1	8,029	8.7
		운영비										
		사학	85,312	4.5	70,100	4.2	73,412	4.1	15,212	21.7	11,900	16.2
지원비												
시설비		180,467	9.6	218,404	13.0	270,402	15.2	-37,937	-17.3	-89,935	-33.3	
교육환경		0	-	0	-	0	-	0	-	0	-	
개선사업비												
교육		3,391	0.2	2,888	0.2	4,220	0.3	503	17.4	-829	-19.6	
청		사업비										
	교육	2,731	0.2	2,616	0.2	2,802	0.2	115	4.4	-71	-2.5	
행정비												

주) ( )는 지역교육청 소관 인건비이나 본청에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계란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 (3)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94예산(안)		'93예산				비교증-감			
	금액 (A)	구성비 (%)	당초		최종		A-B		A-C	
			금액 (B)	구성비 (%)	금액 (C)	구성비 (%)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합계	1,889,395	100	1,672,874	100	1,776,292	100	216,521	12.9	113,103	6.4
인건비	1,204,592	63.8	1,077,735	64.5	1,077,735	60.7	126,857	11.8	126,857	11.8
학계	119,566	6.3	99,149	5.9	112,810	6.4	20,417	20.6	6,756	6.0
국민학교	78,778	4.2	62,466	3.7	73,363	4.2	16,312	26.1	5,415	7.4
중학교	20,770	1.1	17,928	1.1	18,495	1.0	2,851	15.9	2,284	12.3
영고등학교	16,970	0.9	15,025	0.9	18,272	1.0	1,045	12.9	-1,302	-7.1
비기타학교	3,039	0.1	3,730	0.2	2,680	0.2	-691	-18.5	359	13.4
계	240,208	12.7	188,584	11.2	201,976	11.4	51,624	27.4	38,232	18.9
사운	222,523	11.8	181,963	10.8	182,505	10.3	40,560	22.3	40,018	21.9
학지원비										
교육사업	7,085	0.4	6,621	0.4	8,492	0.4	464	7.0	-1,407	-16.6
원지원비										
시설	10,600	0.5	0	0	10,979	0.6	10,600	100.0	-379	-3.5
지원비										
시설비	267,690	14.2	246,341	14.8	318,774	17.9	21,349	8.7	-51,084	-16.0
교육환경	0	0	0	0	1,150	0.1	0	0	-1,150	-100
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34,974	1.9	28,490	1.7	31,006	1.7	6,484	22.8	3,968	12.8
계	15,604	0.8	15,176	0.9	15,866	0.9	428	2.8	-262	-1.7
교육	576	0.0	521	0	527	0	55	10.6	49	9.3
육위원회										
행본	3,552	0.2	3,415	0.2	3,668	0.2	137	4.0	-116	-3.2
정교육청	2,731	0.1	2,616	0.2	2,802	0.2	115	4.4	-71	-2.5
비사업소	3,959	0.2	4,598	0.3	4,636	0.3	-639	-13.9	-677	-14.6
도서관	4,786	0.3	4,026	0.2	4,233	0.2	760	18.9	553	13.1
기세상관금	300	0	100	0	100	0	200	200.0	200	200.0
과년도지출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461	0.3	17,299	1.0	16,875	0.9	-10,838	-62.7	-10,414	-61.7

※학교운영비의 기타학교: 방통교, 유치원, 특수교 포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4. 전입금사항별 예산액(90-94)대비표

'94전입금은 402,132,717천원으로서 연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항별 년도	교원 봉급		담배소비세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학생중식비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계	
	예산액	실전입액	예산액	실전입액	예산액	실전입액	예산액	실전입액	예산액	실전입액	예산액	실전입액
90	99,150	99,150	122,178	121,075	2,575	2,575	165	158			224,068	222,958
91	119,652	119,652	127,626	124,525	2,832	2,832	171	176	360	360	250,641	247,545
92	138,107	128,870	123,008	115,225	9,366	8,592	222	222	310	216	271,011	253,125
93	132,480	123,584	130,714	130,542	7,817	7,334	257	248	271	217	271,539	261,925
94	148,144		247,615		6,117		257				402,133	

5.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889,395,571,000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2조 1994년도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50,0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을 타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비목상호간에는 전용할 수 있다.

- 기본급, 수당
-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는 제외)
- 공공요금
- 상환금(단,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 가능)

2) 회계년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제4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장, 관, 항 사 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공무원 기본급(인건비의 수당 포함)
- 비정규직 보수(기타직 보수에 한한다)
- 세급, 공과금, 배상금, 증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재해대책비
- 반환금
- 복리 후생비
- 시설비(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 한한다)

제5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교육위원회와 시 의회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보고한다.

6. 체부부담 행위

'94년도 중에 없음.

7.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예산규좌와 전입금

- 서울특별시 예산규모는 '94순계예산액

7,759,556백만원으로서 '93순계예산액 대비 7.5%가 증액되었고, '92지출원인행위액대비 12.11%가 증액되었음.

- 반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규모는 '94예산액 1,889,395백만원으로서 '93예산액 대비 6.4%나 팽창되었음.
-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서울특별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402,133백만원을 전출함으로써 교육청 재정의 21.3%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 전출액 402,133백만원은 '93에 비하여 48% 증액한 것이고, '92에 비하면 48.8%를 증액한 것으로서 이 전출금이 법정 전출금이든 비법정 전출금이어든간에 교육청의 재원에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

#### 나. 세입예산부분 및 자립도

세입예산액 1조 8,893억 9,500만원 중 국고재원이 '93년에 66.9%인데 비해, 63.4%로 감소되었고, 서울시 전입금은 '93년 15.3%에서 21.3%로 크게 부담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금은 '93년 17.8%에서 15.3% 감소되었으므로, 손익분기점 대비 자립도는 15.3%로 보겠습니다.

#### 다. 세출예산 부분

교육청재정은 세입예산보다는 세출예산의 편성이나 그 집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에서의 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대부분 법에 정하여진 것이고, 자체수입의 경우도 대부분 재정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 스스로가 세입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1)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 세출예산 중 기관운영비의 계상은

단가를 인상하여야 할 법정요인 이외는 비특별 절감분을 적용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인건비는 교육청이 인력집약적인 관리의 특성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전체 예산의 63.8%인 1조 2,050억 9,200만원으로 교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으므로, 교육환경개선 우선투자에 어려움이 크다고 사료되며,

- 시설비는 '93년도 3,187억 7,400만원 대비 '94년도는 16.0% 감소는 되었으나, 전체예산의 14.2%인 2,676억 9,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효율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및 사업 단위당 산출근거 등이 심사의 초점이 된다 고 사료됨.

#### (2) 본청

- 시설비중 각급 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다목적 신, 증축 9개교의 72억원의 산출근거나 단가가 명확치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교원연수원 이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260억원은 93년도 80억의 보상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상세히 검토해야 할 비목이라고 보여지고,
- 서울과학교육원시설 450백만중, 승강기 1대 교체비용이 3억원이며, 1대 보수 비용이 150백만원인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피촌야영장 강당등 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8억 3,7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너무 많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

료됨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하급교육청

9개 하급교육청 시설비가 1,804억 6,600만원에 달하는바, 9개 교육청별 배정기준이나, 사업별 단위당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지역교육청별 배정내역을 '93년도 대비해 보면 평균 16% 감소되었으나, 동부교육청은 28.0% 증액되고, 강남교육청이 53.6% 감소되고, 북부교육청이 48%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교육청간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라. 결어

- '94년도 예산편성상 서울특별시는 예산을 7.5% 증액편성하면서도 교육청의 진출금은 '93년도대비 48.1% 증액된 4,021억 3,300만원으로 교육청 전체예산의 21.3%를 점하고 있으며,
- 교육청의 예산운용은 자체수입으로 이루는 양출제입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집행의 분석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활용이 요구되며,
- 예산의 심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단위당 산출근거 및 예산절감 등이 심사의 핵심인 바, 교육비특별회계 부문에는 그러한 점이 다소 미흡함을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한층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報告 마치고겠습니다.

○委員長 李詒鎬 여러 委員님들의 要請에 의해서 質問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審査進行과 執行部의 充實한 答辯을 準備하기 위해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에 一括答辯을 듣는 순서로 議事進行을

하고자 하는데…….

○吳柳根委員 지금 提案說明만 들었지 歲入·歲出에 대한 豫算案 說明을 아직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豫算案 說明을 듣고서 質疑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提案說明만 들었지, 豫算案 자체의, 94年度 豫算案 說明을 들어야지.

(「提案說明에 다 나왔어요」하는 委員 있음)

나와 있어도 說明을 들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執行部側의 說明을 듣고서 質疑를 해야지. 提案說明이라는 것은 提案만 說明하는 것이지 內容說明은 아니잖아요.

便利한 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1年 동안의 豫算인데 說明을 들어야지.

○委員長 李詒鎬 提案說明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檢討해야 될 問題거든요.

○吳柳根委員 그래도 아까 보면 說明을 重要な 部分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車奉五委員 提案說明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內容은 우리가 質問을 해서 答辯을 통해서 進行이 되면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檢討報告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質問答辯을 듣는 過程에서…….

○吳柳根委員 그렇게 충분한, 모든 것을 車委員님같이 理解를 하셨다면 모르지만 豫算案 자체에 대한 說明도 안 듣고 質問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100% 理解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說明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委員長 李詒鎬 지금 慣例上 우리가 提案說明을 들었고 이것은 미리 와 있던 것을 우리가 檢討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慣例대로 했는데 지금 吳柳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다시 세부적으로 듣고서 하자는 意見이 들어 왔는데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종전대로 그냥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車奉五委員 慣例대로 提案說明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檢討報告를 들었고, 이제 未洽한 점이 있으면 質問을 통해서 答辯을 듣고 그런 過程에서 진지한 豫算 內容이 부각될 것